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94
----------	------

2017년 9월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14.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7. 8. 16.
3.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9월 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 개발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서울형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7. 7월부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나. 주요사업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

다. 출연의 필요성

-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효율화, 질 향상 지속 강화 요구
-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자원 연계·협력을 통한 서울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필요
- 시의 책무와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우리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재단 운영에 드는 경비 출연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 출연목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임. 「지방재정법」 제17조¹⁾에 의하면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대하여 출연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²⁾에 의거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출연이 가능함.

2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

- 재단은 시립병원의 혁신과 전문적 지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플랫폼 및 씽크탱크로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 추구를 위해 2017년 7월 설립되었음.

※ 7억원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되었음.³⁾ 출범일은 7월 24일이며, 위치는 마포구 에스플렉스 센터 스마트움 8층임.

1)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생략)

2)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보건복지부 설립허가일 2017년 6월 29일,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함.

-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8년 35억원, 2019년 41억3천만원 등 2021년까지 연평균 약 40억원을 출연할 계획임.

<표>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2018년 조정	2019년 조정	2020년 조정	2021년 조정
3,500,000	4,133,000	4,254,000	4,377,000

※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⁴⁾

- 현재 재단의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는 바, 출연 동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실적이나 사업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겠음.
- 그러나 2016년 9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안 심의에서 재단 설립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 가결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현재 재단의 실제 형성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정관 제4조)

1.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 계획 수립의 지원
2.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3.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4.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
5.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6.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7.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8.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2017년 예산은 약 29억원임.

3 출연안의 타당성

- 공공기관의 전문적 관리운영의 혁신을 도모하고, 연계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재단의 설립이라는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진 바, 재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금번 출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994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 개발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서울형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7. 7월부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나. 주요사업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

다. 출연의 필요성

-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효율화, 질 향상 지속 강화 요구
-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자원 연계·협력을 통한 서울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필요
- 시의 책무와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우리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재단 운영에 드는 경비 출연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양영수 (2133-7509)